

<p>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6조제1항중 “제조자 등과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”를 “제조자 등”으로 한다.</p> <p>제8조제2항중 “영 제41조”를 “영 제39조”로 한다.</p> <p>[별지 제2호서식]을 별지와 같이 한다.</p>	<p>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제 5 조(보호수 관리자의 의무) ①보호수의 관리자는 당해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이고 양호한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보호수의 관리책임자는 보호수를 이식 또는 수형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장 총 칙</p> <p>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녹지·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 2 조(적용범위)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녹지·가로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.</p> <p>제 3 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관리청”이라 함은 산림법 등 관련법령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·가로수·녹지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.</li> <li>2. “가로수”라 함은 도시녹화·경관조성·공해방지 및 시민보건 등을 위하여 시가지 및 강변지역 등의 가로변에 조화있게 심는 나무를 말한다.</li> <li>3. “조경시설”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·식재된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나무, 잔디, 꽃,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</li> <li>나. 분수, 조각, 동상, 의자,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</li> <li>다.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, 인공적인 시설물</li> </ul> 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2 장 녹지의 보호</p> <p>제 4 조(보호수의 지정) ①관리청은 산림법 제 67조 규정에 의거 수형이 미려한 수목·희귀수목·대형목 등 특히,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보호수로 지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</p>	<p>제 6 조(유지관리의 지원) ①관리청은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당해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관리청은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상의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제 7 조(수목 등의 관리대장) 관리청은 보호수·녹지·가로수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3 장 가로수 식재·관리</p> <p>제 8 조(가로수 식재) ①관리청은 도로법 제 3 조 규정에 의거 가로수의 계획적 식재와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가로수의 수종은 기후풍토에 적합하고, 병해충 및 공해에 강하며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로 한다.</p> <p>③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고, 가로수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도로에는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.</p> <p>④가로수를 심는 열은 보도폭에 따라 심되 단열심기를 원칙으로 하며, 보도폭이 넓은 지역은 여건에 따라 2열이상 심기를 할 수 있다.</p> <p>⑤가로수 식재는 가급적 수목활착이 양호한 식재적기에 심어야 하며,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 9 조(가로수 관리) ①가로수의 가지치기는 이를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수형조절을 위하여 늘어진 가지·접혀진 가지·병충해 고사지의 가지치기 등 부득이한 경우와 각종 공공안전관을 가리거나 통행 및 주변건물에 저촉되는 수목 또는 사고피해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가로수의 병해충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</p>

<p>기 위하여 병해충 발생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관찰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</p> <p>③가로수의 성장촉진과 조기황화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거름주기·환토 등의 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④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제10조(손해자부담금 등 징수) ①가로수 관리청은 도로법 제64조, 제67조 및 제71조에 의거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, 부분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 손해자에게 손해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손해자가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손해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관리청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을 이식(이설),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사전에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</p> <p>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해자부담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</p> <p>제11조(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)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가로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가로수를 손상시키거나 피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</li> <li>2. 기타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을 목적외로 이용하는 행위</li> </ol> <p>제12조(시민관리제 실시) ①관리청은 가로수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인근 공공기관·학교·단체·기업체·상가 등의 주민으로 하여금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물주기</li> <li>2. 병해충 발생신고 및 방제</li> <li>3.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</li> <li>4.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</li> <li>5.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</li> </ol> <p>②모든 시민은 그 일상생활에서 가로수에</p>	<p>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,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13조(가로수 관리의 위탁)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정공사업면허업체·조경식재공사업면허업체, 농약관리법에 의한식물방제업등록업체, 입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입업협동조합에 가로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4 장 녹화지원·장려</p> <p>제14조(녹화지원)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공익적 기능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무·꽃 등의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된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생울타리 조성, 벽면녹화,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</li> <li>2. 건물옥외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</li> <li>3. 기타 제1항 또는 제2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의 경우</li> </ol> <p>제15조(녹화장려) ①시장은 도시조경수준의 질적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 서울 가꾸기 등의 시민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나무·꽃 등의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, 기술지도, 기타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가로수관리규칙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</p>
---	--

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 ③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	환경관리실(녹지과) 사무명란중 제5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.
--	--

주 관 국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환경관리실 (녹지과)	5. 자동차전용도로, 세종로, 시청앞의 가로수, 녹지대의 관리	도로법 제3조	서울특별시공원녹지 관리사업소장

[별표] 손제자부담금·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

손제자부담금	1. 벌채,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부담금=도급공사설계비 2.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부담금=수목비의 20%+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 ※ 강도의 가지치기: 수관의 1/3이상 3.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부담금=수목비의 10%+작업비	○ 도급공사설계비 및 수목비: 세외수입 ○ 작업비: 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
원인자부담금	4. 이식을 하는 경우 가.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부담금=도급공사설계비 나.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부담금=도급공사설계비+이식비	○ 도급공사설계비: 세 입세출의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○ 이식비: 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
	5. 제거하는 경우 가.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부담금=도급공사설계비 나.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부담금=도급공사설계비+제거비	○ 도급공사설계비: 세 외수입 ○ 제거비: 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
※ ○ 도급공사설계비: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 (수목등 재료비 포함)하여 도급공사설계비로 산정 ○ 수 목 비: 가격정보(조달청)지 가격적용,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 ○ 예치금납부방법: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○ 예치금예치기간: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○ 예치금 환불 등: 예치기간이 경과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		

7. 서울特別市教育償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) (14時 36分) ○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特別市教育償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. (議事棒 3打) 문화교육위원회 徐在浣議員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○徐在浣議員 문화교육위원회 徐在浣議員입니다.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, 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, 오늘 제가 서울特別市教育償條例中改正條例案의 심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먼저 이번 회기에 심사한 서울特別市教育償條例中改正條例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, 동 조례안은 1997년 4월 8일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, 議長은
---	--